

전주지방법원 2021. 8. 17 선고 2021가단270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2. 6. 9 선고 2021나9091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1. 8. 17 선고 2021가단2709 판결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전주시

변 론 종 결 2021. 7. 6.

판 결 선 고 2021. 8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3,265,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2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나. 2021. 2. 3.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310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,8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다. 2021. 2. 3.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

연결한 선내 (ㄴ)부분 199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,2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1966. 4. 13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310㎡(이하 '이 사건 제1도로'라고 한다)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199㎡(이하 '이 사건 제2도로'라고 한다)에 2011. 2. 1. 이전부터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각 설치되어 있다.

다. 이 사건 각 도로에 대한 연 임료는 다음과 같고, 2021. 1. 31.경 임료는 이 사건 제1도로는 월 27,840원, 이 사건 제2도로는 월 14,290원이다.

기간	임료(원)	
	제1도로	제2도로
2011. 2. 1. ~ 2012. 1. 31.	133,610	68,660
2012. 2. 1. ~ 2013. 1. 31.	134,230	69,050
2013. 2. 1. ~ 2014. 1. 31.	136,710	70,250
2014. 2. 1. ~ 2015. 1. 31.	139,810	71,840
2015. 2. 1. ~ 2016. 1. 31.	187,240	96,120

2016. 2. 1. ~ 2017. 1. 31.	227,850	117,010
2017. 2. 1. ~ 2018. 1. 31.	256,990	131,940
2018. 2. 1. ~ 2019. 1. 31.	285,820	146,660
2019. 2. 1. ~ 2020. 1. 31.	321,470	164,970
2020. 2. 1. ~ 2021. 1. 31.	334,180	171,540
합계	1,823,731	936,502

「이전그림」라트 어느 사시 가 제1 네가 4호조의 가 기개 시 변의이 가절의 C세 레

한 임료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로의 점유·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각 도로의 2011. 2. 1.부터 2021. 1. 31.까지 임료 상당액인 3,265,950원(= 2,157,910원 + 1,108,040원)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. 2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, 2021. 2. 3.부터 이 사건 제1도로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,8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2021. 2. 3.부터 이 사건 제2도로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,2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,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와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, 주위 환경, 인근 토지들의 소유관계 및 현황, 원고가 이 사건 각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,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각 도로의 설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의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도로 부분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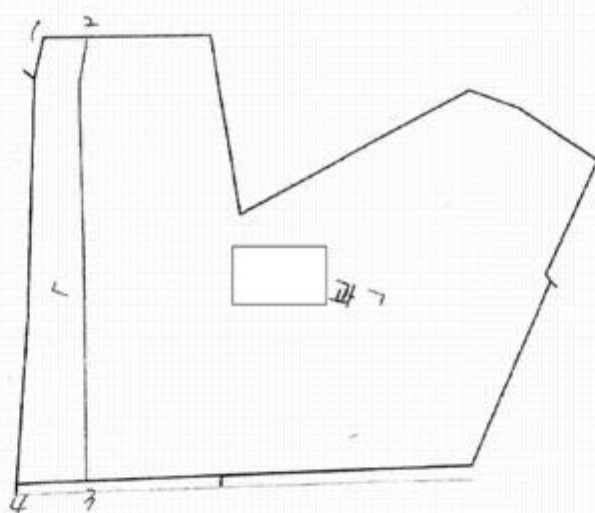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재광

별지 1

도면

전주시 완산구 과수원 2391㎡



별지 2

도면

전주시 완산구 일약 2876㎡

